

환경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저소득층 일자리 연계 업무 협약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과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
환경본부(이하 “공단”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와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연계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은 “개발원”과 “공단”이 ‘기관 간 협력사업’에 관한 각 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협력관계 및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 협력의 내용 및 범위)

협약당사자는 자활세차사업 및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협약당사자는 대구경북지역의 공단 업무 및 직원 차량에 대한 세차
서비스를 자활사업에 연계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협약당사자는 환경 관련 자활사업 연계와 확산을 위한 정보, 자료의
교류를 위해 상호 협조한다.
3.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의 사회적기여
모델 확산과 홍보를 위해 협력한다.

제3조(비밀유지) “개발원”과 “공단”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업무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협약의 목적 외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협의조정) 본 업무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5조(업무협약 개정 및 해지) “개발원”과 “공단”은 대·내외적으로 본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본 업무협약에 대한 합의 개정 또는 임의 해지할 수 있다. 단, 업무협약의 개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효력,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본 협약 내용은 협약 당사자 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개발원”과 “공단”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대한 추가 협조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 및 별도 계약에 따라 정한다.

본 업무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본 업무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1년 3월 12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 장 이 병 학

이 병 학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본부장 진 병 복

진 병 복